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6호

286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외 2필지

○ 면 적 : 3,093.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7월 29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국민은행(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7호의 신탁업자)

○ 대표자 성명 : 허 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236532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성동구 도선동	286	대	1,899.8	1,899.8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100%	-	-	-	-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2		286-1	대	618.3	618.3			100%	-	-	-	-
3		288	대	574.9	574.9			100%	-	-	-	-
합 계				3,093.0	3,093.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성동구 도선동	286	대	일반건축물 (근생시설, 업무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94. 01.21	16,193.83	3	10	주식회사 국민은행	-	-	-	도선동 286-1, 288
합 계							16,193.83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93.0	-	3,09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23.4	증) 2,369.6	3,093.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69.6	감) 2,369.6	-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도선동 286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369.6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선동 286번지 외 2필지	-	증) 3,093.0	3,093.0	-

■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 적(㎡)	결 정 사유
신설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3,093.0	•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신설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3) 및 성
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02-2286-6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외 2필지
- 면 적 : 3,093.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상왕십리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
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
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국민은행(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7호의 신탁업자)
- 대표자 성명 : 허 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2365321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5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093.0	100.0	-
주택건설용지	3,093.0	100.0	임대주택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 1) 수용인구 : 851명 내외 (세대당 2.23명)
- 2) 주택건설계획 : 381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 주택	18A형	30	7.9	30	3.5	청년(일반형)
	18B형	10	2.6	10	1.2	청년(일반형)
	18C형	10	2.6	10	1.2	청년(일반형)
	49A형	19	5.0	50	5.9	신혼부부
	49B형	17	4.5	45	5.3	신혼부부
	49C형	10	2.6	27	3.2	신혼부부
	49D형	6	1.6	16	1.9	신혼부부
	53형	11	2.9	29	3.4	신혼부부
	59A형	10	2.6	27	3.2	신혼부부
	59B형	12	3.1	32	3.8	신혼부부
	소 계	135	35.4	276	32.4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18A형	18	4.7	18	2.1	청년(일반형)
	18B형	14	3.7	14	1.6	청년(일반형)
	18C형	14	3.7	14	1.6	청년(일반형)
	49A형	53	13.9	140	16.5	신혼부부
	49B형	6	1.6	16	1.9	신혼부부
	49C형	13	3.4	34	4.0	신혼부부
	49D형	66	17.3	175	20.6	신혼부부
	53형	13	3.4	34	4.0	신혼부부
	59A형	37	9.7	98	11.5	신혼부부
	59B형	12	3.1	32	3.8	신혼부부
	소 계	246	64.6	575	67.6	-
합 계		381	100.0	851	1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공공·문화체육시설

구 분	시설명	위 치	연면적(㎡)	비 고
신 설	공공시설 ¹⁾	본 청년주택 지상 3층	218.65	설치 후 성동구에 기부채납
신 설	공공시설 ²⁾		781.17	-

※ 공공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1) 성동구 요청에 따른 기부채납시설(교육복지센터)로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 이행

2) 커뮤니티 자원시설의 용도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리청 결정 시 협의 및 결정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시 작은도서관 제안)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대상지 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어 주변지역의 조경수목에 의한 녹지의 연결이 매우 빈약한 상태임
- 단지 내 주차 수요를 지하주차장에 수용하도록 하여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고, 수집 분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활용 할 계획임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93.0	-	3,09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23.4	증) 2,369.6	3,093.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69.6	감) 2,369.6	-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도선동 286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369.6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선동 286번지 외 2필지	-	증) 3,093.0	3,093.0	-

■ 결정사유서

구분	구 역 명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3,093.0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1.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와 동일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확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	3,093.0	도선동 286번지 외 2필지 (286, 286-1, 288)	3,093.0	-

■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 도선동 286번지 외 2필지 확지 결정 - 면적 : 3,093㎡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확지계획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지정용도 (1)	- 공동주택(주거복합)¹⁾ ※ 단,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²⁾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아영장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시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계획

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2) 지상3층에 설치하는 비주거시설은 커뮤니티지원시설에 한함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지정용도, 불허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용도를 지정용도로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폐율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용적률	- 기본용적률 : 754.84% 이하¹⁾ - 상한용적률 : 961.84%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높 이	최고높이 90m 이하²⁾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 준용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결정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비고
공공기여율		• 기본 공공기여율 : 22.43% 이상(부지면적 기준) (제3종일반주거지역 25%, 일반상업지역14% 가중평균 적용)	• 모든 항목을 충족할 경우 기본 용적률 754.84% 부여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 ~ 60㎡ - 1인 세대 : 전용 18㎡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 36㎡ 이상	
건축물 형태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자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주민공동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 364세대 이상 : (전체 건립호 - 299호) × 2.5 × 1.25	
완화 용적률	시설 기부채납)	• 성동구 요청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 - 전용면적 84㎡ 이상(교육복지센터) - 상한용적률 : 기본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토지) + (0.7 × α 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α 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 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상한용적률 961.84%
	공공임대주택	•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1) 성동구 요청에 따른 기부채납시설(교육복지센터)은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붙임1](2) 상한용적률 산정식에 따름

(4)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왕십리로변	3m	-
	무학로2길, 왕십리로26길변	2m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신설 - 왕십리로변 3m - 무학로2길, 왕십리로26길변 2m	인접 도로변의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한계선 결정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내 용	비 고
대지내공지	보도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왕십리로변(3m) - 무학로2길, 왕십리로26길변(2m)	-
	차도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무학로2길, 왕십리로26길변(2m)	
차량출입불허구간	• 왕십리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 (비상차량 예외)	

※ 보도형 전면공지 내 노상시설 설치금지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대지내공지 신설 • 차량출입불허구간 신설	• 인접 도로변의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공지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성

(2) 공공기여계획

구분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고
기준용적률 754.84% 이하	• 부지면적 22.43%(693.76㎡) 이상	• 부지면적 22.54%(697.36㎡) 계획	제3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일반상업(가중평균)
상한용적률 961.84% 이하	• 전용면적 84㎡ 이상 (교육복지센터)	• 전용면적 86.73㎡ 계획 - 지상3층, 연면적 218.65㎡1)	설치 후 성동구 기부채납 (성동구 요청)
	• 용적률 95.64% 이상 (연면적 2,958.29㎡)	• 용적률 96.74% 계획 (연면적 2,992.22㎡)	증가된 용적률의 1/2 공공임대주택 제공
※ 커뮤니티 지원시설 2)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 • 기부채납 시 면적기준 1/2로 완화 3) : 연면적 394.46㎡ 이상	• 연면적 781.17㎡ 계획 - 지상3층	※ 상한용적률 미적용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1) 성동구 요청에 따른 기부채납시설(교육복지센터)은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붙임1](2) 상한용적률 산정식에 따름

2)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용도·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리청 결정 시 협의 후 결정(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시 작은도서관 제언)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3.에 의거,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3-3.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기준에 의함.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공공기여계획 수립	•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 적용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4.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등)을 계획

2)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286	대	1,899.8	1,899.8			100%	-	-	-	-
2	성동구 도선동	286-1	대	618.3	618.3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100%	-	-	-	-
3		288	대	574.9	574.9			100%	-	-	-	-
합 계				3,093.0	3,093.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성동구 도선동	286	대	일반건축물 (근생시설, 업무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94. 01.21	16,193.83	3	10	주식회사 국민은행	-	-	-	도선동 286-1, 288
합 계							16,193.83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문화체육시설

구 분	시설명	위 치	연면적(㎡)	비 고
신 설	공공시설 ¹⁾	본 청년주택 지상 3층	218.65	설치 후 성동구에 기부채납
신 설	공공시설 ²⁾		781.17	-

※ 공공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1) 성동구 요청에 따른 기부채납시설(교육복지센터)로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 이행

2)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용도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리청 결정 시 협의 및 결정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시 작은도서관 제인)

2)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교육복지센터 및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붙임1] (2)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산정 기준 준용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관리규칙」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성동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토지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계	3,093.0	100.0	-	-	-
주택건설용지	3,093.0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